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19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곽동환 의원, 신달호 의원

##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다. 방문방역기동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업무의 대행 및 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방역을 신청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군수는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방문방역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신청서” 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등)**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b>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b>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택형태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p>○ 방역 희망 일시( 20 . . . : )</p> <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p> <p>[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p> <p>[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p> <p>[ ] 기타 세대( )</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달성군수 귀하</p>							
<b>개인정보 이용 동의서</b>							
<p>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2호서식]

###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7조 관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 □ 「지방자치법(법률)」(2025.4.1.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화장장(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4.1. 일부개정, 2025.10.2. 시행)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및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안 제5조)과 이에 수반되는 사항(안 제5·6조)에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따른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원세대수에 따른 예산의 규모 등에 판단됨.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우리 군보다 사업 대상 정의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원 미만임

<p>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li> <li>- 지원범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li> <li>- 2025년 예산: 7,500,000원</li> </ul>	<p>인천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방역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li> <li>- 지원범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li> <li>- 2025년 예산: 45,397,000원</li> </ul>
--	---

- 그 외 방문방역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사항은 사업 시행 시 방문방역 지원 방식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